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룡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267
----------	------

발 의 년 월 일 :2021년 04월 01일
발 의 자 :홍성룡 의원(1명)
찬 성 자 :김재형, 김제리, 김태수,
김평남, 김희걸, 박기열,
박기재, 박순규, 성흠제,
송명화, 송아량, 양민규,
이영실, 임종국, 전석기,
최 선, 최웅식, 한기영,
황규복 의원(19명)

1. 제안이유

- 지진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내진성능확보,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 지진대피소 장소 지정·관리, 지진재난 훈련·교육·홍보 등에 대한 각종 지진 정보를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진 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토록 함은 물론, 서울지진안전센터의 사업 범위에 ‘지진 진동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을 추가함으로써 만일의 지진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장에게 지진 관련 데이터 및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진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토록 신설함. (안 제5조)
- 나.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해 서울지진안전센터의 지진방재 사업에 지진 진동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을 신규로 추가함. (안 제6조제6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 다. 기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의 호번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지진 진동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제5조, 제6조, 제7조의 조번호를 각각 제6조, 제7조, 제8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지진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시장은 내진성능확보, 지진가속도 계측기, 지진대피소, 지진훈련·교육·홍보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진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지진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 시장</u> 은 내진성능확보, 지진가속도 계측기, 지진대피소, 지진훈련·교육·홍보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진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u>제5조(지진방재사업) 시장</u> 은 지진방재 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지진안전센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의뢰할 수 있다. 1. ~ 5. (생략)	<u>제6조(지진방재사업)</u> ----- ----- ----- ----- ----- 1. ~ 5. (현행과 같음) <u>6. 지진 진동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u> 7. ----- -----
<u><신 설></u>	<u>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u> 행과 같음)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u>제6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 ③ (생략)</u>	<u>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u>
<u>제7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	<u>제8조(시행규칙)</u> ----- -----

문서번호

2021032200000006

미첨부 사유서 (1호)

요청인 : 홍성룡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윤지민 예산분석관

접수일 : 2021.03.22

회신일 : 2021.03.26

내용문의 : 02-2180-7945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지진방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지진방재사업)제6호를 신설함에 따라 지진 진동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비용 발생

- 안 제5조(지진정보관리시스템의 운영)에 따른 지진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는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을 통해 각종 지진관련 정보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동일시스템을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고 서울수도 상기 시스템에 현황을 반영하고 있음에 따라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업무포털(NDMS)」 내용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진재해대응시스템 : 지진발생현황, 자치구 인명·시설물 피해추정 확인 등- 가속도계측자료 통합관리시스템 : 지진가속도계측기 실시간 신호확인·분석-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정보관리시스템 : 내진 법정관리대상 시설물의 현황 관리 |
|---|

자료 : 안전총괄실 안전지원과 제출자료(2021)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305,176천원(연평균 61,035천원)

○ 예상되는 비용은 5년 동안 305,176천원으로 연평균 61,035천원임

○ 추계의 전제

- 비용은 2022년부터 발생하고, 비용추계기간(2022~2026년) 이후에도 비용발생
- 물가상승률 미만영
- 비용추계 최초연도에는 지진 진동 모니터링시스템 구축비를 반영하고, 차년도 부터 운영 비용 반영
- 지진 진동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비용 중 시스템 구축 비용은 서울 기술연구원 제출 자료를 참고하여 추계(붙임 참조)

※ 서울기술연구원 제출 자료(2021)에 따르면 지진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용에는 206,200천원(연구개발비 50,000천원, 전산개발비 136,200천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산출함

- 운영비용은 시스템 구축 이후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으로 추계

※ 유지보수 비용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2020.6.15.)」에 따라 SW개발비 기준 용역유지관리 요율(10~15%)을 참고하여 중간값인 12%로 반영하여 추계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 비용 ≙ 305,176천원(연평균 61,035천원)

- 총비용 = 지진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비용 + 지진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비용
 = 206,200천원 + 98,976천원
 = 305,176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지진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비용 (안 제6조제6호)	지진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용	206,200	-	-	-	-	206,200
		지진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비용	-	24,744	24,744	24,744	24,744	98,976
	소계(b)	206,200	24,744	24,744	24,744	24,744	305,176	
□ 총 비용(b-a)			206,200	24,744	24,744	24,744	24,744	305,176

○ 지진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비용 ≙ 206,200천원

- 지진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비용 = 206,200천원
 = 연구개발비 + 전산개발비 + 자산 및 물품취득비
 = 50,000천원 + 136,200천원 + 20,000천원
 = 206,200천원

○ 지진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비용 ≙ 98,976천원

- 산출방식 $\sum_{i=1}^5$ (연간 지진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비)_i

※ i = 비용추계 연차(2023~2026)

- 연간 지진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비용 ≙ 24,744천원
 ≙ 시스템 구축비 × 12%
 ≙ 206,200천원 × 12%
 ≙ 24,744천원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예산분석관 윤지민

☎ 02-2180-7945

e-mail : yjm1030@seoul.go.kr